

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2021- |
|----------|-------|

| | |
|-------|------|
| 제 출 자 | 거창군수 |
|-------|------|

1. 제안 이유

「폐기물관리법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종량제봉투 규격 정비 및 폐기물 배출 시 무게 상한을 정하고,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분리·보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종량제봉투로 생활폐기물 배출 시 무게 상한 신설(안 제7조제6항)
 - 1) 75리터 19킬로그램 이하
 - 2) 50리터 13킬로그램 이하
- 나.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분리·보관 의무 부과(안 제7조의2)
- 다.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안전기준 적용에 따른 예외 신설(안 제12조의2)
- 라. 종량제봉투 규격 정비(안 별표 3)
 - 1) 삭제: 100리터(폴리프로필렌 마대 포함)
 - 2) 신설: 75리터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4조의5·제15조,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6조의3
- 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 의: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
- 라. 기타사항
 - 1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 - 2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: 2021. 5. 3.~5. 24.
 - 나) 예고결과: 의견 1건(일부 반영),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붙임
 - 3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 - 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입법예고 결과 요약서

| 의견제출자 | 제출의견 | 검토의견 | 처리결과(통보내용) |
|---|--|---|--|
| <p>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희봉위생공사 지회(지회장 이영진)</p> | <p>별표 1 대형폐기물, 건설폐기물,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배출 및 수 수료 징수 기준에 -안마의자, 어린이 카 시트 추가 -응접세트 삭제 -간판 규격 세분화를 요구함</p> | <p>-반영: 안마의자, 어린 이 카시트 신설, 간판 규격 세분화함. -반영하지 않음: 응 접세트의 경우, 도내 9개 시군이 운영 중 으로 계속 존치</p>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일부 반영</p> |

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앞의 “제1장 총칙”을 삭제한다.

제4조의3제1항 중 “범위 내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각각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폐기물처리시설(이하 “폐기물처리장”으로 한다)”를 “폐기물처리시설”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”를 “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”로 “kg이상”을 “킬로그램 이상”으로 한다.

제6조 앞의 “제2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·운반·처리”를 삭제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별표 2이”를 “별표 2에서”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생활폐기물(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)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, 규격별로 다음 각 호의 무게 기준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.

1. 75리터: 19킬로그램
2. 50리터: 13킬로그램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생활폐기물의 분리·보관)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가연성, 불연성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,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종이류, 캔류, 병류, 플라스틱류 등으로 분리·보관해야 한다.

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며, 해당 보관 장소는 악취 및 해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관련 안전기준) 군수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. 다만,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주민 생활불편 초래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
2. 가로청소 작업,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 등 작업종류, 여건 등을 고려하여 3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
3. 그 밖에 군수가 생활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5조 앞의 “제4장 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봉투판매소 운영”을 삭제한다.

제15조 조 제목 “(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의 재질)”을 “(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)”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종량제봉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한다.

1. 일반용봉투·재사용봉투: 생활폐기물
2. 공공용봉투: 도로변·골목길 쓰레기, 자연정화쓰레기 등
3.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: 음식물 쓰레기

제21조 앞의 “제5장 생활폐기물의 수집·운반·처리수수료”를 삭제한다.

제21조제1항제1호 중 “아니한다.”를 “않음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“같다.”를 “같음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“한다.”를 “함”으로 한다.

제26조 앞의 “제7장 보칙”을 삭제한다.

별표 1 중 가전제품류란, 생활용품란, 그 밖의 폐기물란의 마지막 칸에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그 밖의 폐기물의 간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| 종 별 | | 규 격 | 처 리 비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가전 제품류 | 전기장판 | 모든 규격 | 3,000 |
| | 안마의자 | 모든 규격 | 8,000 |
| 생활용품 | 어린이 카시트 (유아보호용 장구) | 모든 규격 | 2,000 |
| 그 밖의 폐기물 | 간판 | 90×270센티미터 이상 | 10,000 |
| | | 60×180센티미터 이상 90×270센티미터 미만 | 7,000 |
| | | 60×180센티미터 미만 | 4,000 |
| | | 입간판 | 3,000 |
| | 그 밖에 미선별 생활폐기물 | 10킬로그램 기준 | 2,000 |

별표 2,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하고, 별표 4 비고란 중 “1매당”을 “장당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는 100리터 종량제봉투(폴리프로필렌 마대 포함)는 제7조제6항 및 별표 3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판매 및 사용할 수 있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제1장 총칙</p> <p>제4조의3(청결유지 조치) ① 군수는 토지·건물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<u>범위 내에서</u>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<u>범위 내에서</u>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5조(적용범위)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,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폐기물 등 군수가 설치·운영하는 <u>폐기물처리시설</u> (이하 “폐기물처리장”이라 한다)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.</p> <p>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<u>의하여</u> 군수가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제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외의 군 전역에 적용한다.</p> <p>③ <u>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</u>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·운반·보관·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일 300kg이상이라 하더라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.</p> | <p><삭 제></p> <p>제4조의3(청결유지 조치) ① 군수는 토지·건물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<u>범위에서</u>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<u>범위에서</u>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적용범위)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,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폐기물 등 군수가 설치·운영하는 <u>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</u>에 적용한다.</p> <p>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<u>따라</u> 군수가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제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외의 군 전역에 적용한다.</p> <p>③ <u>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</u>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·운반·보관·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일 300킬로그램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 조례를 적용 한다.</p> |
| <p>제2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·운반·처리</p> <p>제7조(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) ① 법 제15조에 따른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(이하 "중량제봉투"라 한다)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</p> | <p><삭 제></p> <p>제7조(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) ① 법 제15조에 따른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(이하 "중량제봉투"라 한다)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</p> |

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.

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방법 및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.

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.

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, 연탄재, 대형폐기물, 재활용가능폐기물 등의 수집·운반·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 배출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.

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방법 및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.

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.

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, 연탄재, 대형폐기물, 재활용가능폐기물 등의 수집·운반·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 배출하여야 한다.

⑥ 생활폐기물(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)을 중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, 규격별로 다음 각 호의 무게 기준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.

1. 75리터: 19킬로그램

2. 50리터: 13킬로그램

제7조의2(생활폐기물의 분리·보관)

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가연성, 불연성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,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종이류, 캔류, 병류, 플라스틱류 등으로 분리·보관해야 한다.

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, 해당 보관 장소는 악취 및 해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.

제12조의2(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관련 안전기준) 군수는 시행규칙 제16조의

제4장 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봉투판
매소 운영

제15조(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와
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의 재질)

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, 재사용
봉투, 공공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전
용봉투로 구분하고, 일반용봉투와 재
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, 공공용봉투
에는 도로변, 골목길쓰레기 및 자연정
화쓰레기 등을 담아야 하며, 음식물쓰
레기 전용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 담
아야 한다.

②~③ (생략)

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관련
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. 다만, 시
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
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
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수
있다.

1. 주민 생활불편 초래 등을 고려하여
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
는 경우

2. 가로청소 작업, 자동상차장치가 부
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 등 작업
종류, 여건 등을 고려하여 3명이 1
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이 비효율적
이라고 판단되는 경우

3. 그 밖에 군수가 생활폐기물을 시급
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
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
다고 인정하는 경우

<삭제>

제15조(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)

① 종량제봉투는 다음 각 호의 구분
에 따라 사용한다.

1. 일반용봉투·재사용봉투: 생활폐기물
2. 공공용봉투: 도로변·골목길 쓰레기,
자연정화쓰레기 등

3.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: 음식물
쓰레기

②~③ (현행과 같음)

제5장 생활폐기물의 수집·운반·처리수수료

제21조(생활폐기물의 수집·운반·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)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·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(이하 "수수료"라 한다)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.
2. 대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.
3.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.

② (생략)

제7장 보칙

<삭 제>

제21조(생활폐기물의 수집·운반·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)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·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(이하 "수수료"라 한다)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음
2. 대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음
3.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함

②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[별표 2]

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(제2조제4호 및 제7조 관련)

| 종류 | 세부품목 | 배출요령 |
|--------------|---|--|
| 1. 골판지류 | 가. 골판지상자 등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비닐코팅 부분,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·철핀,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2)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3) 비해당 품목: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,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|
| 2. 골판지 외 종이류 | 나. 종이팩(살균팩, 멸균팩: 우유팩, 두유팩, 소주팩, 주스팩 등을 말한다)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배출 2) 빨대,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3)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4)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|
| | 다. 신문지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2) 비닐 코팅된 광고지, 비닐류,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|
| | 라. 책자, 노트, 전단지 등 | 비닐 코팅된 종이, 공책의 스프링,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|
| | 마. 종이컵 |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|
| | 바. 그 밖의 종이류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,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2) 비해당 품목: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, 택배전표, 영수증 감열지, 사진용지,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, 사용한 화장지, 방수 가공 포스터 등 |
| 3. 유리병 | 음료수병, 그 밖의 병류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2)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3)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|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4)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5)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6) 소주,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7) 비해당 품목: 깨진 유리제품(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),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, 내열 유리제품, 크리스탈 유리제품, 관유리, 조명기구용 유리류, 사기·도자기류 등 (P.P마대에 담아서 배출하거나,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으로 배출) |
| 4. 금속캔 | 가. 음료·주류캔, 식료품캔(음료수캔, 맥주캔, 통조림캔 등이 해당함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2)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3)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4)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 |
| | 나. 그 밖의 캔류(부탄가스, 살충제 용기, 스프레이 용기 등이 해당함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2)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3) 비해당 품목: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(락카, 페인트통 등)는 P.P마대에 담아 배출 |
| 5. 무색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(PET)병 |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, 음료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(PET)병[나머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(PET)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] |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(라벨)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|
| 6. 합성수지 용기·쟁반형 용기류 | PVC, PE, PP, PS, PSP 재질 등의 용기·쟁반형 용기류(음료용기, 세정용기 등이 해당함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2) 물로 행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(치약용기 등)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) 부착상표, 부착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4)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5) 비해당 품목: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·문구류, 옷걸이, 칫솔, 과일철, 전화기, 낚시대, 유모차·보행기, CD·DVD, 여행용 트렁크, |

| | | |
|----------------|---|---|
| | |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, P.P마대에 담아서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으로 배출 |
| 7. 합성수지 비닐류 | 비닐포장재, 1회용 비닐봉투(각종 비닐류 해당함)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2) 흘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3) 필름·시트형, 랩필름,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cm² 미만, 내용물의 용량이 30ml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4) 비해당 품목: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, 식탁보, 고무장갑, 장판, 돛자리, 섬유류 등(천막, 현수막, 의류, 침구류 등)은 종량제봉투, P.P마대에 담아서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으로 배출 |
| 8. 발포 합성수지 | 스티로폼 완충재(농·수·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,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가 해당함)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2)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3)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4) 비해당 품목: 다른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, 건축용 내·외장재 스티로폼,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, P.P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배출 |
| 9. 의류 및 원단류 | 가. 면의류 나. 그 밖의 의류 가. 식물성 섬유(면 마 등) 나. 동물성 섬유(울, 모직 등) 다. 합성섬유(폴리에스테르, 나일론, 아크릴, 폴리우레탄 등) 라. 그 밖의 합성섬유류 | 군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갖춰 둔 헌옷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|
| 10. 전지류 | 수은전지, 산화은전지, 니켈·카드뮴전지, 리튬 1차전지, 망간전자 알칼리망간전지, 니켈 수소전지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2)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3) 주요 거점에 갖춰 둔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 |

| | | |
|------------|--|---|
| 11. 형광등 | 직관형(FL), 환형(FCL), 안정기 내장형(CFL), 콤팩트형(FPL), 그 밖에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| 읍면사무소 또는 아파트 내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|
| 14. 가전 제품류 | 대형가전제품(냉장고, 텔레비전, 세탁기, 에어컨)을 제외한 가전제품 | 1)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2) 읍면사무소 또는 아파트 내 소형폐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|

[별표 3]

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 가격(제21조제2항 관련)

1. 종량제봉투 가격의 산정방법

$$\text{쓰레기 수집·운반·처리비용} \times \text{수수료자립도} + \text{제작비} + \text{판매이익}$$

- 가. 쓰레기 수집·운반·처리비용은 압롤카, 밀폐식 압축용기등 현대적인 위생장비를 사용할 경우의 수거·운반비용과 침출수처리시설·가스포집시설등이 설치된 위생매립지 및 위생소각장에서 반입·처리되는 경우의 최종처리비용을 합하여 산정함.
- 나. 수수료자립도는 거창군의 기존 자립도·대행체제에서 직영으로 변경될 때의 부담감, 물가에 미치는 영향, 주민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자기부담률의 현실화 방침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함.
- 다. 제작비는 종량제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.
- 라. 판매이익은 복권판매이익과 같이 9퍼센트를 적용, 쓰레기 수집·운반·처리비용×수수료자립도×0.09로 산정함.

2. 종량제봉투 공급·판매 가격

(단위: 원)

| 용량 | 공급 가격(장당) | 판매 가격(장당)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3리터 | 45 | 50 |
| 5리터 | 91 | 100 |
| 10리터 | 182 | 200 |
| 20리터 | 364 | 400 |
| 50리터 | 819 | 900 |
| 75리터 | 1,228 | 1,350<신 설> |
| 100리터 | 1,638 | 1,800<삭 제> |
| 50리터 (pp) | 964 | 1,060 |
| 100리터 (pp) | 1,929 | 2,120<삭 제> |

관계법령

□ 「폐기물관리법」

[시행 2020. 12. 4.] [법률 제16699호, 2019. 12. 3., 타법개정]

제14조의5(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)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·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(이하 이 조에서 “안전기준”이라 한다)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생활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③ 안전기준,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제15조(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)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(이하 “생활폐기물배출자”라 한다)는 관할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 8. 3., 2013. 7. 16.>

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·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,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, 성질·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에서는 분리·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
□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

[시행 2020. 11. 27.] [환경부령 제891호, 2020. 11. 27., 일부개정]

제16조의3(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)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(이하 “안전기준”이라 한다)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2.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는 경우

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.

3.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. 다만,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가.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

나. 3명(운전자를 포함한다)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

다. 폭염·강추위, 폭우·폭설, 강풍,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

□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(환경부)

2.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

가.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의 배출방법(자동집하시설 설치 경우 포함)

-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작·판매하는 종량제봉투, 배출 스티커 부착 및 기타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
- 50L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(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)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을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통해 제한
 - ※ (예시) 100L: 25kg 이하, 75L: 19kg 이하, 50L: 13kg 이하(폐기물 배출 밀도를 0.25kg/L 이하)

8.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

가. 사업장폐기물의 종량제 확대 적용

-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·운반·보관·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경우 1일 300kg이상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종량제를 가능한 한 확대 적용
- 공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일괄적으로 종량제를 확대 적용
-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자치단체에서 처리 가능한 재활용품은 자치단체장의 판단 하에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유·무상으로 반입 처리가능
-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거용 종량제봉투는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종량제 봉투에 비해 무거워 환경미화원 수거작업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100L 봉투 제작을 금지

□ 2022년(2021년실적) 정부합동평가 대상

| 평가 지표 | 폐기물 관리조례 적기 개정 추진실적 (신규) |
|----------|---|
| 측정 방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조례 적기 개정실적 :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 건수 ○ 산식설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건수 - 「<u>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</u>」에 따른 ‘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’내용 포함한 실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'21.12월까지 조례 개정안이 공표된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며, 입법예고 중이거나 지방의회에 제출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② 시군별 폐기물 관련 조례 시행규칙 등에 포함되더라도 실적으로 인정하나, 재활용품 분리배출방법(요령) 등에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'21년 이전 기 조례 개정 완료한 경우 실적으로 인정함 ○ 목표치: 조례개정 1건 ○ 평가대상 시·군 ○ 평가기준일: 2021. 12. 31. |

□ 「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」

[시행 2020. 12. 25.] [환경부훈령 제1462호, 2020. 8. 24., 일부개정.]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3조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하여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(이하 "시·군·구"라 한다)가 지켜야 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·보관·수거·운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의 분리·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대형폐기물, 1회용 비닐봉투, 음식물쓰레기 등 별도의 수거·처리 등에 관한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이라 한다)이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은 별표 1과 같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별표 1의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각 시·군·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분리수거를 시행하되,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대상인 포장재는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거하여야 한다.

[별표 1]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

1.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

| 품목 | 세부품목 | 배출요령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|
| 가. 골판지류 | · 골판지상자 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닐코팅 부분,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·철핀,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-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※ 비해당품목 :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,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|
| 나. 골판지 외 종이류 | · 종이팩 (살균팩, 멸균팩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- 빨대,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-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-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※ 해당품목 예시 : 우유팩, 두유팩, 소주팩, 주스팩 등 |
| | · 신문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- 비닐코팅된 광고지, 비닐류, 기타 오물이 섞 |

| 품목 | 세부품목 | 배출요령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| | 이지 않도록 함 |
| | · 책자, 노트, 전단지 등 | - 비닐 코팅된 종이, 공책의 스프링, 비닐포장 지 등은 제거 후 배출 |
| | · 종이컵 | -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|
| | · 기타 종이류 | -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,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※ 비해당품목 :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, 택배전표, 영수증 감열지, 사진 용지,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, 사용한 화장지, 방수 가공 포스터 등 |
| 다. 유리병 | · 음료수병, 기타 병류 | -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-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-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-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-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- 소주,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※ 비해당품목 : 깨진 유리제품(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),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, 내열 유리제품, 크리스탈 유리제품, 판유리, 조명기구용 유리류, 사기·도자기류 등(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) |
| 라. 금속캔 | · 음료·주류캔, 식료품 캔 | -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-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-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※ 해당품목 예시 : 음료수캔, 맥주캔, 통조림 캔 등 ※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|
| | · 기타캔류(부탄가스, 살충제용기 등) | -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※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※ 해당품목 예시 : 부탄가스 용기, 살충제 용기, 스프레이 용기 등 |

| 품목 | 세부품목 | 배출요령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비해당품목 :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(락카, 페인트통 등)는 특수규격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|
| 마.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(PET)병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,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(PET)병(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(PET)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(라벨)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|
| 바. 합성수지 용기·트레이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PVC, PE, PP, PS, PSP 재질 등의 용기·트레이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※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(치약용기 등)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- 부착상표,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-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※ 해당품목 예시 : 음료용기, 세정용기 등 ※ 비해당 품목 :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·문구류, 옷걸이, 칫솔, 과일철, 전화기, 낚시대, 유모차·보행기, CD·DVD, 여행용 트렁크,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,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|
| 사. 합성수지 비닐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비닐포장재, 1회용비닐봉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- 흔들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※ 해당품목 예시 :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※ 필름·시트형, 랩필름,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cm² 미만, 내용물의 용량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※ 비해당 품목 :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, 식탁보, 고무장갑, 장판, 돛자리, 섬유류 등(천막, 현수막, 의류, 침구류 등)은 종량제봉투,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|

| 품목 | 세부품목 | 배출요령 |
|-------------|--|--|
| 아. 발포 합성수지 | ·스티로폼 완충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-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-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※ 해당품목 : 농·수·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,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※ 비해당 품목 :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촉된 발포스티렌, 건축용 내·외장재 스티로폼,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,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|
| 자. 의류 및 원단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면의류 · 기타 의류 · 식물성 섬유(면, 마 등) · 동물성 섬유(울, 모직 등) · 합성섬유(폴리에스테르, 나일론, 아크릴, 폴리우레탄 등) · 기타 합성섬유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|
| 차. 전지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수은전지, 산화은전지, 니켈 카드뮴전지, 리튬 1차전지, 망간전지, 알칼리망간전지, 니켈 수소전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-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-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,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·장소에 배출 |
| 카. 형광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직관형(FL), 환형(FCL), 안정기 내장형(CFL), 콤팩트형(FPL),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|

□ 「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」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~4. (생략)

5. “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”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.

6. (생략)

제12조(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)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,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·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,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.